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679 발의연월일: 2023. 8. 7.

발 의 자:이태규·이명수·서병수

김예지 · 권명호 · 엄태영

지성호 • 이인선 • 박덕흠

하영제 • 정운천 • 최연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원의 생활지도, 수업 및 평가,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,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 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 음.

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, 교육에 관하여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은 규정하고 있지만,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③ 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·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호	H	개 정 안
제13조(보호자) ①	~ ② (생	제13조(보호자) ① ~ ② (현행과
략)		같음)
<u> <신 설></u>		③ 부모 등보호자는 학교가 전
		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
		·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
		존중하여야 한다.